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길영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서상열,
서호연, 송경택, 신동원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
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
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
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2호, 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본문 중 “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1항제3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에게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 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다.	제5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<u>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</u> <u>안전물품 지원사업</u>
2. ~ 4. (생 략)	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</u> <u>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</u> <u>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</u> <u>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</u> <u>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</u> <u>람에게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</u> <u>있다.</u>
② <u>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</u> 은 「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 호 조례」를 따른다. 다만, 법무 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.	③ <u>제1항제3호 및 제4호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④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</u> <u>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</u> <u>여 운영 기준 및 지원 방법 등</u>

을 정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사업)제1항 제2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(자치경찰위원회)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¹⁾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(단위: 천원)

관련 조항	사업명	예산액
제5조(사업)	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(전환사업) ○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²⁾	800,000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 계 분 석 관 손제승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이상동기 범죄 등 발생 시 다급한 현장 상황에서 자기방어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 상황을 취명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
2) 지키미(ME)세트 : 휴대용 SOS 비상벨, 안심경보기 등 / 1만 세트